

영주시 공고 제 2022 - 814호

「영주시 주민투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6월 15일

영 주 시 장



## 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2022년 4월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연령이 하향됨에 따라 외국인 주민투표 청구권자 연령을 변경하고,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비상설화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외국인 주민투표 청구권자 연령 변경(안 제3조)

- (당초) 19세, (변경) 18세

나.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심의회 비상설화 규정 마련(안 제12조)

### 3. 개정조례안 : 붙임 참조

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5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(참조 총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E-mail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주소, 연락처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우) 경북 영주시 시청로 1(휴천동 470)

받는사람 : 영주시장(참조 : 총무과장)

연락전화 : (054)639-6263

E-mail : youandi012@korea.kr, FAX : (054)639-6259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	영주시 주민투표 조례
검토사항	
주요내용	<p>※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·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. (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.)</p>

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.

의견 제출자	소속 또는 주소		연락처
	성명	(서명 또는 날인)	

<붙임 1>

영주시 조례 제 호

## 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19세”를 “18세”로 한다.

제1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⑩ 심의회는 주민투표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구성·운영하고, 심의·의결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외국인의 주민투표권) <u>19세</u>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,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.</p>	<p>제3조(외국인의 주민투표권) <u>18세</u>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2조(주민투표청구심의회) ① ~ ④ (생략) ⑤ <u>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2조(주민투표청구심의회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&lt;삭제&gt;</u></p>
<p>⑥ <u>심의회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.</u></p>	<p><u>&lt;삭제&gt;</u></p>
<p>⑦ ~ ⑨ (생략)</p>	<p>⑦ ~ ⑨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⑩ <u>심의회는 주민투표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구성·운영하고, 심의·의결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.</u></p>
<p>⑩ (생략)</p>	<p>⑪ (현행 제10항과 같음)</p>